

인천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가단39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 당사자)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석

변론 종결 2020. 9. 24

판결선 고 2020.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각 6,786,106원, 선정자 E, 선정자 F에게 각 10,179,15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3. 5.경 소외 G 주 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웅진군 H 임야 7,536㎡ 중 768㎡에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2013. 5. 20.부터 2013. 7. 20.로 정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G은 2014. 3. 4. 피고에게 합병되어 그 무렵 해산되었다.

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 8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4가단227552W 위 법원은 2015. 9. 24.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공사잔대금 58,575,292원 및 이에 대한 지 2013.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 등은 위 다.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0. 27.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은 2017. 2. 3. 원고 등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인천 웅진군 H 임야 6,209㎡ 에 관하여 2016. 2. 29.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거쳐 2017. 7. 28. 피고에게 34,790,741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 A, 선정자 F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 A에 대하여는 6,786,1064, 선정자 F에 대하여는 10,179,159원에 대하여 배당이익을 하였으나, 원고 A와 선정자 F은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청구원인

원고 등은, 원고 등이 2018. 6. 28. G의 대표이사였던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 2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더 이상 공사대금 채무가 없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판결에 기초한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 합의 및 그에 따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2018. 6. 28.에 I과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 I은 2012. 9. 7.부터 2014. 1. 7.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1. 8.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 G은 2014. 3. 10.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I이 피고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위 합의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태환

별지